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28일, 이주영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의(2026. 3. 12.)

상정, 축조심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의(2026. 9. 1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주영의원)

최근 응급환자의 이송지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자 수용의 신속성과 이송 편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응급환자 수용체계 개편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현장에서는 의학적으로 보다 정확한 중증도 분류작업과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의 신속성만 고려하여 제도를 개편할 경우, 오히려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통합하여 운영·실시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센터 산하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지원을 비롯한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현행법 및 하위법령은 ‘이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중앙상황실 및 광역상황실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그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중증도 분류 교육을 중앙센터의 업무로 명시하여 해당 교육을 중앙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다만, 개정안은 중증도 분류 교육에 있어 기본교육은 보

건복지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기본교육기관에 소방청을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중증도 분류 교육의 유형 및 역할 분담 등에 대하여서는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종헌)

동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